

KT 손상보증보험



AIG General Insurance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T 손상보증보험 보통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로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관 등의 자료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상품설명서의 계약자 자필서명은 음성녹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에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제 3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 4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1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손상보증기간 이내에 도난이나 화재, 사고손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비용을 손상보증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손상이라 함은 고의로 인하지 않은 급격하고도 우연하며 가시적인 외래의 물리적손상을 말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어떠한 비용이나 손상,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부적합한 전압사용 포함),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2.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비용 3.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등을 포함) 4.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5.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6.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빌린 물품 7. 토지, 건물(주거용 주택 및 아파트도 포함), 영구적으로 설치된 물품, 고정물, 또는 고정구조물 8. 식물, 동물, 해충, 소모품 및 변질되기 쉬운 물품 9. 각종 형태의 전문적인 서비스(예, 노동 또는 보수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재산의 수리 및 설치, 도움 및 지원 라인에서 보증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10.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용,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밖의 손해 11. 제품 고유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이나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12.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홍수, 태풍, 지진등 포함) 13.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4.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진 물품으로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도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나 도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15. 차량 또는 교통수단안에서 혹은 이용 중에 도난 당한 경우로 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크루즈(관광선), 레저수단 또는 민간운송용구를 포함합니다. 16.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 또는 제품이 방치된 상태로 일반대중 또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위치에서 분실한 물품 (단, 피보험자의 근무장소, 초·중·고등학교 및 종교시설은 제외) 17. 제3자 또는 일반적인 운수업체(항공사,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 등)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동안 분실, 도난, 손상 또는 잘못 배달된 경우 18.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19.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또는 보트 등
제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제품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한도는 1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품이 패키지나 세트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경우 도난을 당하거나 손상을 입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제품이 독자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패키지나 세트의 일부분인 제품에 대한 도난이나 손상의 경우 역시 하나의 사고로 취급되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4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위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1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5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해의 통지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사고보고를 한 이후 회사가 안내하는 배송방법에 따라 제품을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직접 배송하여야 합니다. 단, 배송비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청구서(회사양식)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신용카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원본 다. 사고사실확인원이나 도난 또는 화재에 대한 확인서 라.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9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도난보험금을 드렸을 때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손해의 통지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4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2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6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7조(잔존물)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28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29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3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2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KT 손상보증보험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 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의 보험계약기간동안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동안의 회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 정산방법)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 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20명 이상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할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분납 (7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2. 4회분납 : 제1회 분납 (4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제3회 분납 (15%), 년 월 일 납입 제4회 분납 (15%), 년 월 일 납입 3. 12회 분납 : 1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회 분납,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이후, 매월 일 납입
제3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납입최고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만료 7일 이전에 계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4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American Home Assurance Korea
American Home Assurance는 AIG의 계열회사입니다.